



United Nations

난민 글로벌 콤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

유엔 · 뉴욕, 2018



본 국문본의 발간을 위해 감수에 힘써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서문

난민 글로벌 콤팩트 (A/73/12 (Part II))를 확인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결의안이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A/RES/73/151).

이 결의안은 정치적 의지와 책임 분담의 원칙을 운용하고, 국제 사회 전체를 결집시키며, 난민 상황에 대해 발전된 대응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포부의 표시로서 난민에 대한 국제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가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가 제 1회 글로벌 난민포럼을 비롯해 구체적인 행동과 서약, 기여 등을 통해 난민 글로벌 콤팩트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아직 부담 및 책임 분담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담에 기여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19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A/RES/71/1) 의 부록 I에 명시된 포괄적인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는 난민에 대한 국제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해당 부록은 편리한 참조를 위해 본 책자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확인된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실질적 경험과 관련된 비호국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특정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 적용의 영향을 받은 2016년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이 채택된 후 2년 동안 진행된 국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의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난민의 자립을 강화하고, 제3국 해결책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존엄성이 있는 귀환이 가능하도록 출신국의 상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018년 12월, 제네바

목차

I. 서론	7
A. 배경	7
B. 기본 원칙	8
C. 목표	10
D. 예방 및 근본 원인의 해결방안 모색	10
II.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	11
III. 이행 계획	12
A. 책임 및 부담 분담 방안	13
1. 국제 협력을 위한 범세계적 방안: 세계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	13
2. 특정 난민 상황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14
2.1. 국내적 방안	14
2.2. 지원 플랫폼(Support Platform)	15
2.3. 지역 및 하위 지역적(subregional) 접근법	17
3. 책임 및 부담 분담을 위한 주요 수단	18
3.1. 재정지원 및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18
3.2. 다수관계자(multistakeholder) 및 파트너십 접근법	19
3.3. 정보와 증거	22

B. 지원이 필요한 영역	24
1. 수용 및 입국	25
1.1. 조기 경보, 사전 대비 및 긴급 대책	25
1.2. 긴급 수용 방안	25
1.3. 안전 및 안보	26
1.4. 등록 및 증명서류 발급(documentation)	27
1.5. 특별한 필요에 관한 조치	27
1.6. 국제적 보호 필요의 확인	28
2. 필요의 충족 및 지원 공동체	29
2.1. 교육	31
2.2. 직업 및 생계	32
2.3. 보건	33
2.4. 여성과 여아	34
2.5. 아동, 청소년 및 청년	34
2.6. 주거, 에너지 및 자연 자원 관리	35
2.7. 식량안보(food security) 및 영양	36
2.8. 신분등록 (Registration)	37
2.9. 무국적	37
2.10. 우호 관계 증진 및 평화적 공존	38
3. 해결방안	38
3.1. 출신국 지원 및 자발적 귀환	39
3.2. 재정착	41

3.3.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	42
3.4. 현지 통합	43
3.5. 기타 현지 해결방안	44

IV. 후속조치 및 검토 45

뉴욕 선언 발체, 부록 I	
(제1-16항):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계	47



United Nations

난민 글로벌 콤팩트

Global Compact on Refugees

유엔 • 뉴욕, 2018

I. 서론

A. 배경

1. 난민이 처한 곤경은 인류의 공통 문제입니다. 난민 상황은 그 범위와 규모, 복잡성이 확대되어 왔고, 난민은 보호, 지원과 해결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수백 만의 난민이 장기화된 상황에 놓여 있고, 자체적인 경제와 개발 문제에 직면한 중저소득 국가에 주로 살고 있으며, 평균 체류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인도주의적 기금을 포함한 수용국과 기부자들의 매우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재정지원과 그 수요 사이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여 정도 및 각국의 각기 다른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여, 세계의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할 부담과 책임을 더욱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난민과 난민을 수용한 공동체를 소외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2.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달성은 유엔 헌장에서 정한 유엔의 핵심 목표이고, 주권평등원칙¹에 의거합니다. 유사하게,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협약)은, 비호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상황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이 국제적인 협력 없이 달성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² 이 오랜 원칙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실행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난민의 수용 및 다른 수단을 통해 난민보호의 대의에 과거에 기여해온 국가들을 넘어서 지원 기반을 넓히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1 유엔 헌장 제 1조 3항; A/RES/25/2625.

2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서문 4 단락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9, No. 2545). A/RES/22/2312, 제 2조 2항 참조.

3. 이러한 배경에서,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모든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책임과 부담의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적절한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을 포함한 유엔 체계 내부 및 외부의 국제기구; 다른 인도주의 및 개발 주체; 국제 및 지역 금융 기관; 지역 기구; 지방 정부 당국; 종교 기반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학계 및 기타 전문가; 민간 부문; 언론; 수용 공동체 구성원 및 난민 당사자 (이하 “관련 이해당사자”).

4. 본 글로벌 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난민 및 영향을 받고 있는 수용국과의 협력과 연대의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 전체의 정치적 의지와 포부를 나타냅니다. 자발적 기여를 통하여 집합적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콤팩트의 목표(아래 7단락)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는 국내 상황, 역량, 개발 수준, 국내 정책 및 우선순위의 고려 하에 각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B. 기본 원칙

5. 본 글로벌 콤팩트는 인류애와 국제 연대의 근본 원칙의 소산입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난민을 보호, 원조하고 수용국과 수용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과 부담의 분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본 글로벌 콤팩트는 이행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유엔 헌장의 원칙 및 목적에 의거합니다. 이는 근본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난민 보호 체제에 기반합니다.³ 몇몇 지역은 또한 해당 지역의 고유한 맥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문서

3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606, No. 8791).

를 채택하였습니다.⁴ 본 글로벌 콤팩트는 관련 국제 인권 문서,⁵ 국제인도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타 국제 문서⁶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본 글로벌 콤팩트는 적용 가능한 경우,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문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⁷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 및 독립성의 인도주의 원칙— A/RES/46/182 및 이를 이은 해당 주제에 관한 모든 유엔 총회 결의서(A/RES/71/127 포함) — 그리고 보호의 중심성 또한 글로벌 콤팩트의 전반적인 적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지도력이 성공적인 이행의 열쇠입니다.

-
- 4 1969 OAU 협약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001, No. 14691); 1984 년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78조, 기본권에 관한 유럽 연합 헌장 (Charter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 18조 참조. 또한, 1966년 12월 31일 난민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방콕 원칙 (Bangkok Principles on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of 31 December 1966) 참조.
 - 5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포함 (그 중에서도 제 14조 비호를 구할 권리) (A/RES/3/217 A); 비엔나 선언과 실행 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아동 권리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No. 27531); 고문 방지 협약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465, No. 24841);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660, No. 946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No. 1466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3, No. 14531);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249, No. 20378); 장애인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515, No. 44910) 참조.
 - 6 예: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237, No. 39574);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241, No. 39574).
 - 7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60, No. 5158); 1961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09, No. 14458).

6. 난민 관련 국제법 문서의 많은 비당사국들이 난민 수용에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당사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법 문서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유보 중인 당사국들은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C. 목표

7. 본 글로벌 콤팩트의 전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수용국의 부담 완화; (ii) 난민의 자립 강화; (iii) 제 3국 해결방안의 접근성 확대; 및 (iv)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귀환을 위한 출신국 상황 지원. 본 글로벌 콤팩트는 정치적 의지의 동원, 지원 기반의 확장, 국가 및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더 공평하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여를 돕기 위한 방안들을 통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이 네 가지 목표의 달성을 추구합니다.

D. 예방 및 근본 원인의 해결방안 모색

8. 대규모의 난민 이동과 장기화된 난민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당사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 자연재해는 그 자체가 난민 이동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점점 더 난민 이동의 요인들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본 원인의 해결은 난민 이동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난민 상황의 방지와 해결은 국제사회 전체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며, 근본 원인과 촉발 요인들을 다루기 위한 조기의 노력과 정치적, 인도주의적, 개발 및 평화 주체들의 견고한 협력을 요합니다.

9.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글로벌 콤팩트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의 분쟁 예방 및 평화, 안보, 지속가능발전, 이주 및 평화구축 분야의 노력을 보충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대규모 난민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강화된 국제적 노력; 유엔 헌장,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 옹호; 만인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옹호, 존중, 보호와 실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나이 및 기타 지위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착취, 학대 및 차별의 종식. 또한 국제 사회 전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기타 관련 체계⁸에 의거하여 빈곤 완화, 재해 위험 축소, 출신국에 대한 개발 원조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II.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

10. 본 글로벌 콤팩트의 제 II장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A/RES/71/1, Annex I)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 (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CRRF)입니다. 이는 본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8 예: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 2030) 및 아프리카 연합 2063 의제(Agenda 2063).

III. 이행 계획

11. 결의문 A/RES/71/1에 의거한 이 이행 계획의 목적은 부담과 책임을 분담할 효과적인 방안을 통하여 난민 및 대규모 난민 이동이나 장기화된 난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제 III장 A편);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수용국 및 필요한 경우 출신국을 위한 기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제 III장 B편). 각 편은 서로 연결지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12.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는 대규모 난민 상황에 특히 관련된 체계지만, 인구 이동이 반드시 동질적인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대규모 이동이 난민과 다른 종류의 이동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및 환경 악화로 인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강제 이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피해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기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은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IOM)를 포함한 관련 주체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의무, 역할 및 전문성을 필요에 맞게 조직화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13. 본 이행 계획의 기반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참여적 접근, 그리고 연령, 성별 및 다양성의 고려,⁹ 즉 성평등,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모든 형태의 성·젠더 기반 폭력,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학대, 유해한 관습의 종식; 청년, 장애인과 노인의 유의미한 참여 도모;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차별 철폐를 포함합니다

9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 제 108호 결정문(LX)(2008), (f)-(k) 참조.

A. 책임 및 부담 분담 방안

14. 난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국가들(장기간 수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은 해당국의 제한된 자원으로 보편적 이익과 인류의 대의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대응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 다음 방안들은 수용국 및 수용 공동체와 더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게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고, 해결방법(적절한 경우 출신국에 대한 원조를 포함합니다)을 찾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6. 국제 연대와 협력 원칙의 완전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방안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실행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이행 계획은 중복을 피하고, 유엔난민기구 프로그램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와의 적절한 연계 등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의 절차 안에서 효율적으로 방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난민으로 인한 책임과 부담 분담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 전체가 대규모 난민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므로, 본 방안들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절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1. 국제 협력을 위한 범세계적 방안: 세계난민포럼 (Global Refugee Forum)

17. 유엔의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장관급의 세계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을 주기적으로 소집할 것이며, 7단락에 명시된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기여를 발표하고, 책임 및 부담 분담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방법 그리고 이에 예상되는 과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포럼은 2019년에 소집될 것입니다. 이후 포럼은, 총회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이상, 추진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

씩 소집될 예정입니다. 포럼은 하나 또는 여럿의 회원국과 유엔난민기구가 공동 소집하고 공동 개최하며,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포럼이 열리는 해에는 보호 과제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의 대화(the High Commissioner's Dialogue on Protection Challenges)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18. 세계난민포럼에서 이루어질 약속과 기여는, 재정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¹⁰ 재정착 장소 및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complementary pathways), 그리고 글로벌 콤팩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국내적 차원에서 선택한 그 밖의 실행 방안들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장 B편 이하는 약속과 기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예시적인 지침의 역할을 합니다.

19. 2019년 첫 번째 세계난민포럼은, 공식적인 약속과 기여를 받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후의 포럼에서는 새로운 약속을 할 기회뿐만 아니라, 국가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전 약속의 이행과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 달성을 향한 진전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각 포럼 개최 사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뒷받침 될 것이며, “중간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난민포럼과 고위급 회담에서 진행되는 상호 점검은 글로벌 콤팩트 후속조치의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래 제 4장 참조).

2. 특정 난민 상황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2.1. 국내적 방안

20. 모범 사례를 참조하고 국가 차원의 지도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수용국은

10 예를 들어 2.2절의 지원 플랫폼(Support Platform)을 위한 예비 자원 혹은 기여

국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 대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국내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 방안의 구성과 수행 방식은 수용국이 결정할 것이며, 해당 국가 당국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의 필요성도 또한 수용국이 결정할 것입니다.

21. 이러한 노력은 국가 주도로 국내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포괄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유엔난민기구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지원합니다. 포괄적 계획은 정책 우선순위, 기관구성 및 운영 방안, 투자·자금 조달·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건, 재정 착과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 및 자발적 귀환을 포함한 영구적 해결방안으로 이루어집니다.

2.2 지원 플랫폼(Support Platform)

22. 국내적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국들은 지원 플랫폼의 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¹¹

23. 지원 플랫폼은 상황에 맞게 난민과 해당 수용국 및 수용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파트너십의 정신과 수용국의 주도적 역할 및 지도력에 입각하여, 플랫폼은 다음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 예방, 보호, 대응 및 영구적 해결방안을 위한 정치적 헌신과 옹호 활성화;
- 포괄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21 단락) 세계난민포럼에서의 약속에 입각한 금전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 그리고 재정착 및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 지원의 동원;
- 난민과 수용 공동체 지원을 위한 개발 주체의 조기 및 지속적인 관여를 포함 한, 일관성있는 인도주의적 대응 및 개발 측면에서의 대응 촉진;

11 5 단락의 내용에 의거.

- 수용국의 부담 완화, 회복력 및 자립성 구축, 영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괄적 정책 구상 지원.

24. 해당 수용국 또는 출신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지원 플랫폼을 활성화/비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여하기로 약속한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 대응 노력 및 정치적,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계획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용국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또는 초과할 것이라 예상되는 대규모 그리고/또는 복잡한 난민 상황;
- 수용국에 상당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화된 난민 상황 그리고/또는 영구적 해결방안이 적용가능한 중요한 기회가 발생하는 상황 (예, 출신국으로의 대규모 자발적 귀환).

25. 각 지원 플랫폼은 기여와 지원을 모을 때 일단의 국가들의 지도력과 참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23 단락). 상황에 맞게 국가들이 구성될 것입니다.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참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6. 지원 플랫폼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며, 운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계난민포럼 등에서) 사전에 공표된 의향과 예비 방안들에 따를 것입니다. 이는 인도주의 및 개발 협력을 위한 기존의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이와 상호작용합니다.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정보, 사례, 경험이 활발하게 공유되도록, 유엔난민기구는 참여 국가들과 협의하여 지원 플랫폼의 업무를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유엔 총회, 세계난민포럼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27. 플랫폼을 통한 지원 전략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절차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플랫폼은 포괄적 대응체계의 지지기반

을 형성하기 위해 연대 회의(solidarity conference)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고, 다년간에 걸친 것이야 하며,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32 단락의 내용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연대 회의는 개별 상황에 적합해야 하고, 수용국 또는 출신국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 개발 주체, 시민 사회, 현지 공동체 및 민간부문을 아울러야 하고, 재정적·물질적·기술적 기여, 그리고 재정착 및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2.3 지역적·하위지역적(subregional) 접근법

28. 난민 이동은 종종 지역적 또는 하위지역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역과 하위지역의 기구와 그룹은 다양한 성격을 갖지만, 적절한 경우 포괄적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포괄적 대응 사례 역시, 정치적 차원의 원인까지 포괄하여 난민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지역적 협력이 갖는 가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9. 지역·하위지역의 기구 또는 그룹은 적절한 경우 국제적 지원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난민 상황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동의 하에 지원 플랫폼, 연대 회의 및 그 밖의 방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호보완적 성격을 유지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고 적절한 한, 포괄적 대응은 난민보호와 영구적 해결방안에 관한 기존의 지역·하위지역 계획(지역·하위지역 재정착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30. 유엔난민기구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난민포럼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지역·하위지역 기구 사이에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3. 책임 및 부담 분담을 위한 주요 수단

31. 이하의 단락은 책임 및 부담 분담을 위한 수단을 설명하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보완합니다.

3.1 재정지원 및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32.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 및 부담 공유에 대한 기여는 재정지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신속하고 예측가능하며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공적·사적 재정의 동원은 글로벌 콤팩트의 성공적 이행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극대화, 악용 방지 및 투명성 보장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다른 경로(전통적 기부자를 넘어 지원기반을 확장하려는 노력 등)를 통해, 새로운 혹은 장기화된 대규모 난민 상황을 마주한 국가들에게 각국의 역량에 맞게 자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¹²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인도적 원조: 국가 및 인도주의 주체는 긴급 대응 및 장기화된 상황 모두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필요 기반의 인도적 원조를 인도주의적 원칙에 온전히 의거하여 조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가능할 경우 예측가능하고, 유연하며, 특정 항목에 한정되지 않은, 다년간의 재정지원을 포함합니다.¹³
- 개발 협력: 국가 및 기타 개발 주체들은 난민, 수용국 및 수용 공동체에 대한 지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민 상황이 수용국과 수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양자간·다자간 채널을 통하여 무상증여나 높은 양허성(concessional) 수준의 형태로 제공되는 통상의 개발 원조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개발 자원이 될 것이고, 수용국 및 수용 공동체, 그리고 난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

12 사무총장에 대한 고위급 패널의 인도주의적 재정지원에 관한 보고서(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by the High-Level Panel on Humanitarian Financing, 2016년 1월)에서 권고된 바와 같은 혁신적인 재정지원 제도 포함.

13 A/RES/71/127, A/71/353 참조.

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지도력의 우위를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¹⁴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나, 자발적 귀환의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출신국에 혜택을 주는 개발 원조가 우선시 될 것입니다.

- 민간부문 기여의 극대화: 해당 수용국 또는 출신국이 요청하면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은 국가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조치 및 위험 경감 방안; 기업 환경이 우호적인 경우 민간부문 투자, 기반시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재생에너지 등 혁신적 기술 개발(이는 특히 기술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난민 수용국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난민과 수용 공동체를 위한 금융상품과 정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3.2. 다수관계자(multistakeholder) 및 파트너십 접근법

33. 국가의 우선적 책임과 주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관련 법적 체계에 근거하여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수관계자 및 파트너십 접근법을 추구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위임된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더해, 조력자와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34. 대응은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관여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련 주체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난민 및 수용 공동체 구성원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대응을 함께 고안할 수 있는 협의절차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난민 및 수용 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해당되는 경우 디아스포라도) 주요한 포럼과 절차에 포함시킬 최선의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불만사항 접수, 사기·권한남용 및 부패의 조사와 예방 체계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14 A/RES/71/127, A/71/353, A/RES/69/313 참조.

줄 것입니다.

35. 각각의 임무에 따른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도주의 및 개발 주체는 난민 상황의 초기부터 그리고 장기화된 난민 상황에서 협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이들은 수용국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이 실제로 상호보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을 개발할 것입니다. 난민의 필요를 해결할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자간·다자간 개발 주체와 재정 주체가 수용국 및 난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파트너십 하에 수행될 것입니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지도력의 우위를 존중하면서, 해당국의 더 넓은 범위의 개발 목표를 위한 지원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를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6. 유엔 체계는 최대한 활용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혁 의제, 특히 평화, 안보 및 개발에 관한 의제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유엔 지속가능발전 그룹(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유엔 국가팀(UN Country Team), 모든 관계 기관의 기여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엔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의 지도에 따라, 국가의 개발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국 및 난민 지원을 위한 유엔 개발 활동은 적절한 경우 유엔 개발원조 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s) 내에서 고려되어, 각국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준비되고 확정할 것입니다.¹⁵ 유엔 지역 사무소를 통해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 현지 공동체 지도자 및 전통적 공동체 운영 기관을 포함한 지방 당국 및 기타 현지 주체들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보통 대규모 난민 상황에 대한 첫번째 대응자가 되고, 중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국가 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적 체계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제도적 역량과 기

15 A/RES/72/279 참조.

반 및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차원에 국제 사회 전체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경우 재정 지원과 역량 개발을 포함합니다. 현지 주체, 단체, 체계의 지속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및 개발 단체들이 관련 법과 정책에 의거하여 현지 직원을 고용하도록 권장합니다.

38. 친선도시 등의 방법으로 모범 사례와 도시지역에서의 혁신적인 대응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난민을 수용한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39. 마찬가지로, 글로벌 콤팩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해당국의 제도에 따라 의회가 관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¹⁶

40. 시민사회단체가 난민과 수용국 및 수용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파트너십 정신 하에, 시민사회단체는 가능한 경우 공동체 역량 및 욕구를 평가하고,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계획과 체계를 실행하며,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는 난민, 여성, 청년 또는 장애인이 주도하는 단체와 지역 및 국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41. 종교 기반 단체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를 돕기 위해 분쟁 방지, 화해 및 평화 구축, 그리고 기타 관련 분야에서 각 방안의 계획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2. 인도주의적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¹⁷: 상업적 벤처기업 환경 조성 and 재정적/사업 수단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 및 방법론 모색; 난민 및 수용 공동체의 고용과 노동이동 지원; 민간부문 투자기회 확대. 민간부문은 난민 상황에서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강화하고, 수용국에서의 사업 기회 탐색 수단을 공유하며, 도움이 된다면 국가 차원의 민간 부문 활성화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권장합니다.

16 A/RES/72/278 및 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활동 참조

17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Development (GFMD)의 활동 참조.

43.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대학, 학문단체 및 연구 기관들을 포함하는 난민, 기타 강제이주 및 무국적 문제에 관한 전세계적 학문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 교육 및 장학 기회를 증진할 것입니다. 지역 다양성과 폭넓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4. 스포츠와 문화 활동은 사회적 발달과 포용, 통합 및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난민 수용 지역에서 스포츠, 문화 시설과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입니다.¹⁸ 특히 난민 아동(남아 여아 모두)과 청소년, 그리고 고령자 및 장애인들에게 중요합니다.

3.3 정보와 증거

45.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시의 적절한 정보는 증거에 기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상, 긴급 및 장기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이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와 검토, 적절한 해결방안의 발견과 계획, 필요성, 비례성, 비밀유지의 원칙 등 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여러 원칙은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적용됩니다.

46. 증거 기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난민과 귀환자에 관한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및 다양성 등 세분화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를 위한 통합된 또는 상호 이용이 가능한 기준의 개발을 도모할 것입니다.¹⁹ 관련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정보와 통계 수집 과정

18 Olympic Refugee Foundation 및 유엔난민기구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Football Club Barcelona Foundation 등 관련 기관의 활동 자료 참조, The 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및 A/RES/71/160 참조.

19 “난민 통계에 관한 국제적 권고사항(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on refugee statistics)”.

에 난민과 수용 공동체, 그리고 관련된 경우 귀환자와 무국적자를 포함시키고, 난민, 수용 공동체, 귀환자에 관한 국가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47. 정보와 증거의 개선은 또한 해결방안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정보와 증거는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과 귀환자의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투자 및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국가, 유엔난민기구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재정착 및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의 가능성과 적용사례에 관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유, 분석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해당 영역에서 얻은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48. 책임 및 부담 분담 방안을 알리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협력의 공백을 가능하고, 더욱 공평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하게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및 적절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난민의 수용, 보호,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측정을 도울 것입니다.²⁰ 2018년 유엔난민기구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으로부터 기술적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관련 방법론들의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여 향후의 접근법에 관한 폭넓은 합의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공유하여, 이를 토대로 2018-2019년에 국가간 공식적인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첫번째 보고서는 첫번째 세계난민포럼과 맞물린 2019년에 발행될 것입니다. 후속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는 7 단락에 따라 더욱 공평하고 예측가능하게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아래 IV장도 참조).

20 A/RES/72/150, 20 단락.

B. 지원이 필요한 영역

49. B편에 명시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수용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난민과 수용 공동체 구성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영역들은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의 기본축들을 중심으로 분류되었고 과거의 포괄적 대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특정 상황의 맥락과 국내 우선순위, 전략 및 정책에 따라 대규모 난민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인(people-centred) 대응책을 위한 지원을 어느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줍니다. B편에 명시된 조치의 성공 여부는, 탄탄하고 올바르게 기능하는 책임 및 부담 분담 방안(A편)과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 책임 및 부담 분담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여²¹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 이행에 달려있습니다.

50.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지도력, 국내 정책 및 우선순위 존중에 의거하여, 수용국, 혹은 관련된 경우 출신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각 상황마다 고유한 맥락이 있고, 각국은 다른 체계, 역량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B편의 영역들이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B편은 수용국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의무를 지우는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콤팩트의 주요 목적은 다른 국가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기여를 통해 수용국,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51. B편에 명시된 조치들은 다양한 필요와 잠재적인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도모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성 및 여아; 아동,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 성·젠더 기반 폭력, 성적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의 생존자;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1 위 4 단락의 내용 참조.

1. 수용 및 입국

1.1. 조기 경보, 사전 대비 및 긴급 대책

52. 긴급 대책 등 사전 대비는 중기적 상황을 포함하여 대규모 난민 상황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예방 의제에 의거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대규모 난민 이동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국가, 지역, 그리고 유엔이 지원하는 사전 대비 및 긴급 대책 노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53. 국가 주도 하에 관련 당국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미리 위기 모니터링 및 사전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원을 구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의 지원도 구할 것입니다. 사전대비 조치는 전 세계적, 지역적, 하위지역적, 국내적 조기 경보 및 조기 대응 체계, 재난 위기 감소 노력, 장래 이동과 긴급상황을 증거에 기반하여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적 국내 실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호대상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국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잠재적 예비 원조 패키지, 필요한 기술과 인적 자원의 사전 배분과 같은 예비 역량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 즉시 수용 방안

54. 많은 수의 난민이 도착할 때, 국가와 공동체들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유입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지원하고자, 유엔난민기구, 여타 국가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국가의 수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연령, 성별, 장애 및 다른 특별한 필요를 반영하는 수용 및 경유 구역의 설치(적절

한 경우 “안전 공간(safe spaces)”을 통해), 수용 구역 내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조 및 필수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수용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국경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난민 캠프에 대한 대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55.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국내 체계를 이용한 원조 제공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들이 수립한 대응 조치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해당국과 협의 하에 인적, 기술적, 물질적 원조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 예비 방안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 및 긴급 배치 시, 신속한 입국을 촉진시키기 위한 해당국의 조치가 권장됩니다.

1.3. 안전 및 안보

56. 안보의 고려와 국제적 보호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안전 및 보안의 주요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며, 난민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 통합적 접근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안보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수용국의 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는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난민 상황 및 장기화된 상황 모두에서, 국제적 보호의 비전투원적(civilian)·인도법적 성격을 유지하고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²²

57.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국내법과 정책의 충분한 존중 하에, 유엔난민기구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새로이 도착한 난민의 신속한 보안심사와 건강검진이 보호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관련 당국의 역량개발, 예를 들어 국제적 난민 보호 및 배제 기준 관련 역량; 성·젠더기반폭력, 인신매매,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강화; 공동체 중심 치안 유지 활동 및 사법

22 1951년 협약 제 9조 참조;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94호(LIII)(2002)와 제 109호(LX)(2009); A/RES/72/150, 28 단락 참조.

체계에 대한 접근권을 위한 역량 개발; 관련 보호 예방조치에 의거한 국경 진입 지점 또는 도착 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서의 전사(fighter) 및 전투원(combatant)의 신원확인고 분리. 이전에 무장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와 원조를 위한 계획의 개발과 실행 또한 지원될 것입니다.

1.4. 등록 및 서류 발급(documentation)

58. 난민의 등록과 신원확인은 누가 입국했는지 알아야 하는 국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원조와 보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난민 보호 체계의 온전함을 보장하고 사기, 부패,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며 그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등록은 해결방안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요청이 있으면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모든 개인의 등록 및 서류 발급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상 개인에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과 소녀들이 포함됩니다. 디지털화, 생체 인증 및 기타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원칙에 합치하도록 연령·성별·장애·다양성으로 세분화된 질적 자료를 수집·사용·공유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할 것입니다.

1.5. 특별한 필요에 관한 조치

59. 특별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추가적인 자원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미동반 및 분리 아동을 포함한 아동; 위기에 처한 여성(women at risk); 고문, 트라우마, 인신매매, 성·젠더기반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또는 유해한 전통 관습 생존자; 의료적 필요가 있는 이들과 장애인; 문해 능력이 없는 이들과 청소년 및

청년; 고령자.²³

60. 해당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이들의 신원확인, 심사 및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절차 및 과정으로의 회부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운영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수관계자 대응 팀이 설립 될 수 있습니다.²⁴ 이는 미동반 및 분리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신원확인 및 아동 최상의 이익 평가/결정 절차로 회부와 함께 적절한 양육 방안 혹은 여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²⁵ 국제적 보호 필요 또는 생존자 지원의 확인을 포함한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착취 생존자의 신원확인 및 적절한 절차 및 과정으로의 회부는 핵심적입니다.²⁶ 무국적자 및 무국적 위기에 처한 이들의 확인 및 무국적 인정 절차 등으로의 회부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비감금형태의 공동체 기반, 특히 아동을 위한 구금 대안의 발전을 위해 또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1.6. 국제적 보호 필요의 확인

61. 개인의 국제적 보호 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는 국가들이 적용가능한 국제 및 지역 의무(A/RES/72/150, 51 단락)에 따라 그 영토 내에 있는 이들의 지위를 적법하게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보호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보호를 구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²⁷ 대규모 난민 이동의 맥락에서, 해당국이 적절하다

²³ A/RES/46/91.

²⁴ 이는 시민사회, 지역 단체,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이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함.

²⁵ A/RES/64/142.

²⁶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237, No. 39574);

²⁷ 위의 5 단락 참조;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3호(LV)(2005) (s) 및 제 96호(LV)(2003).

고 판단할 경우 단체 기반 보호[난민 지위의 일응 인정(prima facie recognition) 등]는 국제적 보호 필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2. 유엔난민기구는 그 임무에 따른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기술적 영역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비호 역량 지원 그룹(Asylum Capacity Support Group)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때 지역적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이 그룹은 세계난민포럼의 일부에서 맺은 약속(pledge)과, 전문성 또는 자금지원 등 형태의 공헌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이 그룹은 해당국의 요청 하에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적용가능한 국제, 지역 및 국내 법적 문서 및 법에 따라 국내 비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 공정성, 효율성, 유연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련 국내 당국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예비 방안 및 비호 체계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간 좋은 관행의 공유, 비호 신청의 처리 세부원칙(예: 명백히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는 신청에 대한 간소화된 또는 신속 절차), 등록 및 사례 관리 절차, 면접 기술 및 폭넓은 제도적 역량 개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3. 나아가 적절한 경우, 관련 임무와 전문성을 지닌 이해당사자들은 기타 보호 및 인도적 과제를 다루는 조치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 재해로 인한 강제 이주민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적용가능한 국내법 및 지역적 법적 문서와 적절한 경우 임시적인 보호²⁸ 및 인도적 체류 제도와 같은 관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필요의 충족 및 지원 공동체

64. 난민 상황의 철저한 관리는 종종 수용 공동체의 회복력에 기초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따라, 대규모 난민 상황이 제기하는 개발 과제와 난민 수용 지역에서의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그 공유로 모두가 이득을

28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22호(XXXII)(1981); 제 74호(XLV)(1994), (r)-(u); 제 103호(LVI)(2005), (l).

본다는 인식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콤팩트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향한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원조를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 난민 공동체의 회복력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수용국들은, 대개 영구적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수용국의 노력에 동반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충분한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난민과 수용 공동체를 돕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해서 영구적 해결방안을 위하여 향후의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보완합니다.²⁹

65. 개발 주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용 공동체와 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개발 프로그램 및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대규모 난민 사태가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도록, 인도주의적 원조 및 개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할 것입니다. 파트너십 정신, 국가의 지도력과 주도적 역할의 우위, 국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와 궤를 같이 하는 예측가능한 국제사회의 대응의 동원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난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수용국이 추가적인 개발 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6. 인도주의적 원조는 필요중심적이고,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 및 독립성과 같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가능한 한 난민과 수용 공동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용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난민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인도주의적 원조는 적절한 경우 지역과 국가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 원조(다목적 현금 원조 포함)를 전달하는 노력을 포함할 것입니다. 점점 더 난민들은 캠프 밖의 도시와 농촌에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67. 아래에 명시된 영역들은 수용 공동체와 난민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

29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9호(LX)(2009) 참조.

제사회 전체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역들은 포괄적 대응의 적용을 돕기 위해, A 편에서 언급된 방안들을 포함하여 외부의 기여가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명시된 영역은 의무적이거나 모든 항목을 포함하거나 또는 수용국에 추가적인 의무 및 부담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원은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 정신 하에 관련 국내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연관된 기존 국내적 노력 및 정책과 연결되어 제공될 것입니다.

2.1. 교육

68. 국가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은,³⁰ 수용국의 교육법, 정책 및 계획에 따라 수용국을 지원하여, 난민과 수용국의 아동(남자아이 및 여자아이 모두), 청소년, 청년의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내 교육 체계의 품질과 포괄성을 증진시키는 데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난민 남아 및 여아들이 교육의 틀 밖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도착 후 3개월 이내로 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과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9. 상황에 따라, 교육 시설(영유아기 발달,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 포함)과 교사 역량(적절할 경우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교사로서 관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지원 포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영역은 난민에 특유한 교육수요("안전한 학교"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혁신적 방안 포함) 충족과 탄력적인 학력인정 학습프로그램 등 난민의 입학 및 출석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

30 각국 교육부와 국내 교육 계획 위원회에 더하여, 이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Connected Learning in Crisis Consortium,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유엔난민기구, 유네스코(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및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RWA), Education Cannot Wait, th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을 포함.

하기 위한 노력, 특히 여아, 장애 아동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아동을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난민을 포함하는 국내 교육 분야 계획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학력과 전문적, 직업적 자격의 동등성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3.3 절,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 참조).

2.2. 직업 및 생계

70. 수용 공동체와 난민을 포괄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국의 국내 법과 정책에 따라 수용국을 지원하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³¹ 여성,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³² 수용 공동체 구성원들과 난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 및 기업이 정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71.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 및 수입 발생에 관한 격차와 기회를 조사하기 위한 노동 시장 분석;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기술, 자격의 파악과 인정; 이러한 기술 및 자격의 강화를 위한, 특히 여성, 장애인, 청년을 위한 언어 및 직업 훈련 등 취업 기회와 연계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한 생계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 격차를 줄이고 역량을 강화(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수용 및 난민 공동체의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적절한 비용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

31 이는 민간 부문 및 현지 기업, 국제 노동 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세계은행(the World Bank Group),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OECD, 유엔 난민기구, the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국제이주기구, 노동자 및 고용인 조합, 소액 금융기구 그리고 학계를 포함.

32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 지침에 따라 이행: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서 채택된 R205—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2017 (No. 205) 및 “Guiding principles on the access of refugees and other forcibly displaced persons to the labour market” (국제노동기구, 2016 7월).

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관련 위험을 줄이고, 가능한 한 저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송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몇몇 상황에서는, 적절할 경우, 관련 국제적 의무에 의거하여, 특히 난민의 노동 참여가 높은 재화 및 분야에 대한 특혜 무역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 및 기반사업 투자를 유치하고, 현지 사업자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3. 보건

72. 국내 보건법, 정책 및 계획에 의거하여, 그리고 수용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³³ 국내 보건 체계를 확장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켜 난민과 수용 공동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과 여아,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인, 결핵 및 HIV를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 인신매매, 고문, 트라우마 또는 성·젠더기반폭력을 포함한 폭력 생존자,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73. 상황에 따라, 이는 보건시설을 건설·제공하거나, 국내법 및 정책에 따라 보건직 종사자(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의료직 포함)로 활동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역량 개발과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의 기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 예방접종, 신체 활동 및 스포츠를 포함한 보건 증진 활동이 권장됩니다. 충분한 양의 의약품, 의료 기구, 백신, 진단 및 예방 물품에 적절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협약 또한 권장됩니다.

33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난민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이주기구; 국제 접종 및 면역 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GAVI); 국제 에이즈 대응 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 WHA70.15 (2017) 또한 참조.

2.4. 여성과 여아

74. 여성과 여아에게는 젠더와 관련된 특유한 장애물이 있어 대규모 난민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국제적·국내적 제도에 의거하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난민과 수용 공동체 내의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완전한 인권 향유와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에는 남성과 남아에게 특유한 필요와 상황 또한 고려할 것입니다.

75. 이는 여성과 여아의 의미있는 참여와 주도를 촉진하고, 모든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국가 및 공동체 기반의 여성단체들의 제도적 역량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포함합니다. 여성과 여아의 사법접근권 및 보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성적 착취 및 학대, 성·젠더기반폭력, 위협한 관습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령, 장애, 성별을 고려한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여성 보건 종사자의 고용과 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과 여아들의 행동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중등 및 고등 교육 포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2.5. 아동, 청소년 및 청년

76. 세계 난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아동입니다. 수용국을 지원하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³⁴은 여아 및 남아, 장애 아동, 청소년, 미동반 및 분리 아동, 성·젠더기반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위협한 관습으로부터 생존한 아동, 그리고 기타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특별한 취약성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한 정책 및

34 UNICEF 및 관련 시민사회 단체 포함.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여아와 남아를 위해 연령을 고려한 통합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을 포함할 것입니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필요에 대한 대응, 국내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투자 및 위기 아동의 연속적 보호, 돌봄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제 협력, 지역적 파트너십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당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난민아동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 가족 찾기(family tracing)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역량 개발도 지원할 것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난민 남아 및 여아의 재정착 및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77.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청년들의 재능, 잠재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는, 회복력을 높이고 궁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들의 역량과 기술을 인정하고 활용하여 발전시키고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개선할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청년의 활발한 참여와 개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2.6. 주거, 에너지 및 자연 자원 관리

78. 상황에 따라, 수용국은 대규모 난민의 주거시설과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의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수용국을 지원하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난민과 수용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주거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두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79. 이는 다음 사항의 국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여를 포함할 것입니다: 주거시설, 식수, 위생시설, 기반시설 및 난민을 수용한 도시·농촌 지역과 부근의

환경문제 해결; 수용국 중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서 기술격차를 줄이고 저비용의 적절한 스마트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 환경영향평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난민과 수용 공동체에게 더 효과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모델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도시 및 지방 거주자들의 생활 및 업무 환경을 포함하여, 거주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료 및 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 계획 또한 지원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그리고 국가간 협의를 통해 기술 역량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재해 위험 감소 전략에 난민이 포함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7. 식량안보(food security) 및 영양

80. 식량 및 영양은 우선적인 기본적 필요임을 감안하여, 수용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³⁵들은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있는 식품에 대한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접근성을 촉진하고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이들의 식량안보 및 영양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81. 이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긴급한 식량 및 영양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장 알맞은 수단으로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식량을 원조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을 포함합니다. 적합한 수단으로는, 현금 기반 송금 또는 사회적 보호 체계의 활용 증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영양에 민감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난민과 수용 공동체의 접근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다양성, 지배적인 문화적·종교적 관습,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고려하여, 지역 농산물 구입 촉진, 식량 가치 사슬(food value chain)의 병목 현상 해결 등 난민수용지역의 가계 및

35 이는 세계 식량 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농업 식량 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함께 국제 식량 개발 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을 포함.

식량, 농업 생산 체계의 회복을 위한 지원 또한 제공될 것입니다. 식량 생산 등 식량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충격 및 스트레스 요인들을 견여내기 위한 현지 공동체 및 수용국 정부의 역량 개발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2.8. 신분등록 (Registration)

82. 신분등록과 출생등록은 국가가 해당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난민의 보호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특히 여성, 여아 및 다른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출생등록이 반드시 국적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법적 신분을 형성하고 무국적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수용국을 지원하여, 적절한 경우 난민과 무국적자가 신분등록과 출생등록, 서류 발급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원칙을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2.9. 무국적

83. 무국적은 난민 이동의 원인 및 결과 모두가 될 수 있음³⁶을 고려하여 무국적 방지와 감소를 위한 우수하고 젠더인지적(gender-sensitive)인 관행을 공유하고, 적절한 경우 유엔난민기구의 무국적 종식을 위한 캠페인(Campaign to End Statelessness) 등 관련 기준 및 계획에 의거하여 무국적 종식을 위한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국가 및 유엔난민기구,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무국적자 지위에 관

36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1호(LV)(2004), (k) 참조.

한 1954년 협약과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1961년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2.10. 우호 관계 증진 및 평화적 공존

84. 영구적 해결방안이 가능할 시점까지 공동체 간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고 난민과 수용 공동체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증진시키는 방식의 계획 및 프로젝트를 국내 정책에 의거하여 고안할 것입니다. 난민의 역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젝트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는 현지 공동체 및 인력을 위한 기술적 협력 및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스포츠, 문화 활동, 언어 학습, 교육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참여를 장려할 것입니다. 차별에 맞서고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종교 기반 단체,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매체 등의 힘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이용될 것입니다.

3. 해결방안

85. 글로벌 콤팩트의 주요 목적(7 단락) 중 하나는 난민 상황의 초기부터 해결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의거한, 정치 및 안보 협력, 외교, 개발 및 인권의 보호와 옹호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위기의 발생을 방지할 핵심적인 실마리입니다. 동시에 난민 아동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계획은 각국의 수용능력, 개발 수준, 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여러 해결방안을 결합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세 가지 기존 영구적 해결방안인 자발적 귀환, 재정착, 현지 통합 뿐만 아

나라, 그 밖에 현지 해결방안과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도 포함됩니다.³⁷

86. 이전 B편에서와 같이, 아래 명시된 요소들은 해결방안의 성취를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 요청이 있으면 출신국 그리고 적절할 경우 수용국에게 세계난민포럼 및 지원 플랫폼 등을 통하여 자발적 귀환을 위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 재정적 및 보충적 경로³⁸의 제안이 A편에 명시된 방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 현지 통합은 주권적 결정이지만, 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현지 해결방안을 선택한 해당 국가들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3.1. 출신국 지원 및 자발적 귀환

87. 안전과 존엄성을 조건으로 하는 자발적 귀환은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 상황에서 선호되는 해결방안입니다.³⁹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자발적 귀환의 조건을 고취하고, 정보에 근거한 자유로운 선택⁴⁰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귀환을 뒷받침할 지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할 난민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자발적 귀환은 반드시 출신국의 정치적 해결책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37 100 단락 참조.

38 위의 4 단락에 의거하여 제안.

39 A/RES/72/150, 39단락;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90호(LII)(2001), (j); 제 101호(LV)(2004); 제 40호(XXXVI)(1985).

40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1호(LV)(2004)에 의거.

있습니다.⁴¹ 난민의 자발적 귀환이 공식적인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의 맥락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함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자발적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출신국이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귀환의 지속가능성의 도모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88. 이에 따라, 수용국에 대한 진행중인 지원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 전체는 요청이 있으면, 난민 상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귀환의 방해물을 제거하며, 자발적 귀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출신국을 지원하는 데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주의, 평화구축 및 개발을 위한 개입을 조율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적·기술적 체계를 고려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의거할 것입니다.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련 국가들과 유엔난민기구가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삼자협정을 맺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89. 덧붙여,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출신국이 귀환자들, 특히 여성, 청년, 아동, 고령자 및 장애인을 수용하고 재통합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법적 역량에 관한 지원을 하는 데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개발, 생계, 경제적 기회를 위한 지원과 주거, 토지 및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할 경우, 귀환자에게 직접적 귀환을 돕도록 현금 및 기타 원조의 형태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는 귀환 후 추가적 강제 이주(국내적 또는 국제적 이주)를 피하고 국내 실향민의 상황과 비실향민 거주 인구를 고려⁴²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당국과 협력하여, 귀환 지역의 보호 관련 위험요소의 정보공유와 이러한 위험의 분석을 위한 체계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⁴³

41 예: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112호(LXVII)(2016), (7).

42 국내실향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A/RES/54/167 및A/RES/72/182 등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참조.

43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귀환자 모니터링 의무에 의거: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40호(XXXVI)(1985), (i); 제 101호(LV)(2004), (q); 제 102호(LVI)(2005), (r).

3.2. 재정착

90. 난민의 보호와 해결방안의 도구가 되는 것 외에도 재정착은 책임 및 부담 분담을 위한 실제적인 체계이자 국가 간 연대의 표현으로, 국가들이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대규모 난민 상황이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착은 제한적 숫자의 국가들만이 제공해왔습니다. 재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역량 강화 및 기반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91.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하고,⁴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원조를 받아⁴⁵ 재정착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그 범위, 규모 및 질적인 부분을 확장할 것입니다.⁴⁶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유엔난민기구는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3개년 전략(2019–2021)을 고안하여, 국제적인 재정착 노력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재정착 장소의 선택지를 늘리고, 우수 사례 및 신흥 재정착 국가 공동 지원 체계(Emerging Resettlement Countries Joint Support Mechanism, ECRM)와 지역적 방안들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생겨난 재정착 프로그램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신규 및 신흥 재정착 국가들을 파악하고 연결하며, 전문성 및 다른 기술적 지원, 공동 프로젝트,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개입 등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92. 이에 더하여, 적절한 경우 재정착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우수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확약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재정착 제도 수립; 재정착 과정의 예측가능성, 효율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예: 보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절차의 도

44 이는 위의 4단락에 의거.

45 이는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OMI),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그룹, 종교 기반 단체, 학계, 개인 및 민간 부문을 포함.

46 A/RES/71/1, 부록 I, 16 단락.

입으로 연간 신청의 최소 25%를 유엔난민기구의 요청 6개월 내에 재정착); 재정착의 전략적인 사용을 보장하여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난민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에 기여 (예: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재정착 필요성 예상에 따라 파악된 장기화된 난민 상황 등 우선적인 상황에 유엔난민기구의 재정착 기준에 따른 재정착 할당 인원 배치; 그리고/또는 재정착 신청의 최소 10%를 예비 할당 인원으로 배치하여 유엔난민기구가 파악한 긴급 혹은 비상 난민 상황에 대비); 위기에 처한 여성과 여아 등 재정착 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용·통합 서비스에 대한 투자;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동 등 긴급 재정착 절차를 위한 긴급 경유 시설이나 기타 방안 이용 등.⁴⁷

93. 재정착 핵심 그룹(core group)의 증명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상황에서는 핵심 그룹이 보호 필요성과 안보 고려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율된 대응을 계속하여 촉진할 것입니다.⁴⁸ 보다 일반적으로는, 삼자간 연례 재정착 협의, 재정착 실무진(working group) 및 핵심 그룹 등 기존 다자간 재정착 체계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콤팩트 하의 모든 노력은 기존 체계를 지지할 것입니다.

3.3. 제 3국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

94. 재정착을 보완하여, 국제적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들의 입국을 위한 다른 경로들은 보호 그리고/또는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가 더욱 체계적, 조직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젠더에 민감한 기반 위에 이용될 수 있고, 적절한 보호 예방조치를 포함하며, 이를 제공하는 국가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7 당사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화용 협약 여행증명서(convention travel documents)의 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발급될 수 있음.

48 이는 잠재적으로 지원 플랫폼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 일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음.

95. 또한 재정착에 관한 3개년 전략(위의 3.2절 참조)은 이용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늘리기 위해 입국을 위한 보충적 경로를 포함할 것입니다.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⁴⁹의 도움을 받아, 가족결합을 위한 효과적 절차와 확실한 연계 경로를 촉진하거나, 정기적 재정착에 추가하여 세계 난민 스폰서십 계획(Global Refugee Sponsorship Initiative, GRSI)이 장려하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등 개인 또는 공동체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입니다. 보충적 경로를 위한 그 밖의 기여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도적 비자, 인도주의적 통로(humanitarian corridors) 및 다른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 정부와 교육기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한 장학금 수여와 학생 비자 발급으로 난민(여성과 여아 포함)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제 3국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난민을 파악하는 등으로 난민을 위한 노동력 이동 기회 제공.

96.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는 새로운 국가들을 위해 우수 관행, 교훈, 역량 개발을 공유하도록 각국의 기여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위의 47단락 참조)

3.4. 현지 통합

97. 대부분의 난민 상황에서 자발적 귀환이 여전히 선호되는 해결방안이지만, 난민 상황을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선택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현지 통합은 주권적 결정이며, 해당 국가의 조약상 의무와 인권원칙에 따라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⁵⁰ 몇몇 중저소득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이 마주하는 대규모 난민 상황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장기적인 법적 지위 부여와 귀화 등을 통한 난민의 현지 통합이 유용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98. 현지 통합은 모든 당사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쌍방향의 과정이

49 시민사회, 종교 기반 단체, 민간 부문, 고용주, 국제기구, 개인 및 학계 포함.

50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104호(LVI)(2005), recital 1.

며, 이를 위해 난민은 수용국에 적응할 준비, 수용 공동체 및 공공기관들은 난민을 맞이하고 다양한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저소득 국가는 난민과 수용 공동체 모두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방식의 성공적인 현지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99. 현지 통합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는 수용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통합을 위한 전략적 체계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지 통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 기관, 현지 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서류 발급 문제의 해결, 여성과 여아를 포함하여 난민을 위한 언어 및 직업 교육의 촉진, 존중과 우호 관계를 조성하고, 생계 유지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수용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고, 현지 노동 시장 평가와 여성과 청년층 등의 기술 프로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계획 및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의거하여, 난민들이 정착할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난민의 장기적인 법적 지위 또는 귀화를 위한 경로 제공에 있어서 국내법을 보완할 지역적 체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3.5. 기타 현지 해결방안

100. 난민이 그들의 역경에 대한 영구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현지 통합에 더하여, 몇몇 수용국은 난민을 위한 기타 현지 해결방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잠정적인 합법적 체류와 함께, 난민의 적절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포용을 도모하며, 이용가능한 최종적인 영구적 해결방안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민을 위한 기타 현지 해결방안을 채택한 국

가가 파악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⁵¹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평화롭고 생산적인 난민의 포용과 현지 공동체의 안녕을 조성하고, 서류 발급, 체류허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법적·제도적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을 통하여 자원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IV. 후속조치 및 검토

101. 국제사회 전체는 동등한 지위에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책임 및 부담 분담을 통해, 글로벌 콤팩트와 이에 따르는 목표의 성취를 위한 지원을 동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임무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본 기구의 임무에 맞게 이러한 노력의 촉매와 지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 콤팩트의 후속조치 및 검토는 주로 세계난민포럼(이견이 없는 한, 4년에 한 번씩 개최)과 고위 관료 회의(포럼 사이 2년에 한 번 개최);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의 유엔 총회 연간보고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 유엔난민기구,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등 중인 사람들에 관한 다른 절차 및 활동과 정합성 있는 방식으로 글로벌 콤팩트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102. 글로벌 콤팩트의 성공여부는 앞서 명시된 네 가지 목표(7 단락)의 달성을 향한 진전 정도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첫 세계난민포럼에서 각 목표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입니다.

103. 세계난민포럼은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 달성을 향한 진척 상황 점검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것입니다. 포럼은 또

51 관련 지원 가능한 영역 99 단락 참조.

한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적 상황에 관해서 그리고 전세계 차원에서, 모범 관행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중인 책임 및 부담 분담 위한 방안들의 효과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난민의 수용, 보호 및 원조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에서 진행한 절차의 결과(48 단락)와 협약의 이행 및 기여를 추적하고 글로벌 콤팩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수립한 체계를 통하여, 포럼에서 현황이 점검될 것입니다.

104. 글로벌 콤팩트에 대한 고위 관료 회의가 포럼 사이에 열릴 것입니다. 이는 보호 과제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의 대화(High Commissioner's Dialogue on Protection Challenges)와 협력하여 개최될 것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척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활성화하여, 원동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련 고위 관료 회의는 2021년에 개최될 것입니다.

105.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유엔 총회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콤팩트의 목적 달성의 진척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106.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세계난민포럼에 여성, 장애인, 청년을 포함한 난민들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난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개발한 모두에게 접근성이 보장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콤팩트의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범 관행을, 특히 연령, 성별, 장애 및 다양성의 관점에서 모범 관행을 공유할 것입니다.

107. 글로벌 콤팩트는 공유하는 의제와 공동의 결과를 지원하도록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난민과 수용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결과를 우리는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뉴욕 선언 발취, 부록 I

(제1-16항):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계

1. 오늘날 난민 실태의 규모와 성격은 대규모 난민 이동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협력의 원칙과 부담 및 책임 분담에 입각한 포괄적인 난민 대응을 통해 난민을 더 잘 보호하고 조력할 수 있으며, 수용국 및 관련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대규모 난민 이동을 수반하는 개별 상황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와 기타 유엔 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계를 개발 및 시행할 것이다. 포괄적인 난민 대응은 국가 및 지방 당국, 국제 기구, 국제 금융 기관, 지역 기구, 지역 조정 및 파트너십 메커니즘, 종교 기반 기관과 학계를 포함한 시민 사회 파트너, 민간 부문, 매체와 난민 당사자를 포함한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3. 대규모 난민 이동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아래 언급된 요소는 국제 법과 국제 모범사례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맥락에 맞게 조정된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의 난민 대응 체제를 제공한다.

4. 전체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의 필수적이고 뚜렷한 부분으로서 장기화된 상황을 포함하여 대규모 난민 이동 포함 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제를 구상하며, 여기에 일반적으로 아래에 명시된 요소가 포함될 것이다.

접수 및 입국

5. 대규모 난민 이동 초기에, 국가 역량과 국제법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필

요에 따라 유엔난민기구, 국제기구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고 요청받은 다른 국가의 지원과 함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한 적합성에 따라 수용국은:

(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필요가 있는 사람, 인신매매 피해자, 아동 보호, 가족 결합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난민으로 식별하고, 적절하고 안전하며 존엄이 유지되는 수용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보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 공동체 및 사회의 중요한 기여를 지원한다;

(나) 여성과 여아 난민의 권리, 특정 필요, 기여 및 의견을 고려한다;

(다) 적절한 안전 식수, 위생, 식품, 영양, 쉼터, 심리사회학적 지원 및 성 및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국과 공동체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필수 요구를 평가하고 충족합니다;

(라) 최초 비호 신청한 국가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난민으로서 비호를 신청하는 이를 도착 후 가능한 신속하게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기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체 인식 기술 및 기타 기술 및 재정적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유엔난민기구가 필요 시 관련 행위자 및 파트너와 조정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마) 위험에 처한 여성, 아동, 특히 미동반 아동 및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 한부모 가정 또는 아동가장 가정, 인신매매 피해자, 트라우마 피해자, 성폭력 생존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과 노인과 같은 특별 보호 우려를 가진 난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게 가능한 경우 등록 절차를 사용하여 특정 조력 필요사항 및 보호 조치를 확인한다;

(바)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난민 아동의 즉각적인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결혼, 이혼 및 사망 증명서와 같은 민사적 지위에 관한 다른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조력을 가능한 빨리 제공한다;

(사) 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와 수용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를 수립한다;

(아) 난민촌 및 정착촌의 민간 및 인도주의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 국적국, 경유국, 도착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비호 체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난민 지위가 없는 자의 귀국 및 재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즉각적 및 지속적 필요사항 지원

6. 다자간 원조국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가는 수용국과 협력하여:

(가)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계 내에서 확인된 인도주의적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동원한다;

(나) 국가, 시민사회, 종교 기반 및 민간 부문 파트너를 포함한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자원을 제공한다;

(다) 현재 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금융 대출 제도를, 해당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중간소득국까지 확대한다;

(라) 위 국가에 대한 개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확립을 고려한다;

- (마)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국을 지원한다;
 - (바) 필요에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현금 기반 전달 메커니즘 및 기타 혁신적인 수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수혜자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7. 수용국은 유엔난민기구 및 기타 유엔 기구, 금융 기관과 기타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 (가) 현재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하며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한다;
 - (나)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과 같은 적절한 국가 및 지역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 (다) 긴급 단계 초기에 난민과 수용 공동체를 포함하고 연령 및 젠더인지적이고 여성과 아동, 기타 특정 요구가 있는 자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지원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난민을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라) 인도주의적 대응에 기여하는 지역 시민사회 파트너의 상호보완적 기여를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한다;
 - (마) 필요에 따라 인도주의적 및 개발 행위자와 기타 관련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고 공동 계획 수립을 장려한다.

수용국 및 공동체 지원

8. 국가,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파트너는:
- (가) 난민, 국가 및 지역 당국과 난민 이동으로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대해 필요

한 조력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규모 난민 이동이 예상되거나 시작된 후 공동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위험 또는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나) 수용 공동체와 난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개발 계획에 포괄적인 난민 대응 체계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통합한다;

(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증가된 필요사항과 압박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 당국과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공적 개발 지원과 별개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그램은 난민과 수용국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영구적 해결책

9.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시기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의 보장은 국제 보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점을 인식한다. 해결책 모색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확고하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지원에 달려 있다.

10. 자발적 귀환, 현지 해결책 및 재정착과 보충적 경로와 같은 영구적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래 명시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재확인하며 폭력과 무력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치적 해결책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며 재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신국/국적국은: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를 떠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나) 이 권리를 존중하고, 또한 국제법 하의 의무에 따라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안전하고 존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자국민을 수용할 의무를 존중한다;

(다) 필요한 신분 및 여행 증명서를 제공한다;

(라) 귀환민의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촉진한다;

(마)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고려한다.

12. 지속가능한 귀환 및 재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유엔 기구 및 관련 파트너는:

(가) 난민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한, 즉 본국의 보호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한, 귀환의 자발적 성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 자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귀환, 재통합 및 화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지원한다;

(다) 회복, 재건, 개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그리고 난민이 국가 보호의 회복 및 재통합에 필요한 법적, 물리적 및 기타 지원 메커니즘 접근을 위해 필요한 법적 안정장치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출신국/국적국을 지원한다;

(라) 특히 난민 공동체와 여성 및 청년의 평등한 참여와 함께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법치주의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마) 평화와 화해 과정에 여성을 포함한 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그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바) 국가 개발 계획이 귀환민의 특정 필요를 포함하고 미래의 실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재통합을 촉진하도록 보장한다.

13. 수용국은 국가 역량과 국제법적 의무를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유엔난민 기구,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및 다른 유엔 기구, 금융 기관과 다른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가) 귀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영구적 정착에 관한 결정이 수용국에 있음을 인식하고 난민으로서 국제 보호를 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 체류 자격을 제공한다;

(나) 난민 간에 차별하지 않고 수용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및 서비스, 생계유지 기회 및 노동 시장에 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역량이 강화된 난민이 본인과 소속 공동체의 복지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난민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서 인적 자본, 자립 및 이전 가능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 투자한다.

14. 제 3국은:

(가) 민간 부문의 참여와 조치를 보완책으로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료 상 피난, 및 인도주의적 입국 프로그램, 가족 재결합과 숙련된 이주, 노동 이동성 및 교육을 위한 기회를 통한 난민 수용을 위한 재정적 기회와 보충적 경로를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

(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다) 필요에 따라 임시 인도주의 피난 프로그램 및 기타 형태의 입국과 함께 대규모 이동 및 장기화된 상황에서 재정적 및 인도주의적 입국 프로그램에 대

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

15. 아직 재정착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은 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재정착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이 권장된다. 이미 수립한 국가는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를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차별 없는 접근 방식과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

16. 국가는 유엔난민기구가 파악한 연간 재정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재정착지 및 기타 법적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